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34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구

피 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형주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H호, 원고 B은 위 아파트 I호, 원고 C는 위 아파트 J호, 원고 D은 위 아파트 K호의 소유자였고, 소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아파트를 매수하여 가칭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들과 L는 2019. 6.경 원고들은 L에 매매대금을 각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가.항의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L는 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N호, 원고 B에게 O호, 원고 C에게 P호, 원고 D에게 Q호의 소유권을 각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L에 위 가.항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21. 2. 8. L에 '건축 인허가가 2020. 10. 20. 완료되었음에도 2021. 2. 4.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21. 2. 9. L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2019. 6. 17.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L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L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L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각 5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서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보증금 각 5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보증서에 있는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각 보증서는 위조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인영의 동일성을 다툴 때에는 서증 제출자가 문서의 진정성립(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 자체를 증명하거나 인영의 동일성을 증명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서의 피고 부분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증서의 피고 부분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12,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증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과 이 사건 각 보증서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상 법인인감과 상이한 점1), ② 피고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울산남부경찰서는 2023. 9. 6.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2019. 6. 17.경 보증서를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아파트 토지 재건축 입주민에게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한 점, ③ 위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R(L의 대표이사 S의 배우자)는 이 사건 각 보증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대표이사인 T나 그 위임장을 가진 자가 아닌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보증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선화, 판사 이연용, 판사 황동준

1) 이 사건 각 보증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의 회사명은 ‘F’이나, 피고의 인감증명서상 법인인감의 인영의 회사명은 ‘U’이다.